

대한민국족구협회 정규직 공개채용

대한민국 족구 종목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. 열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.

1 채용분야

채용직급	채용분야	채용인원	근무부서	주요업무
대리	사무행정	1명	사무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홈페이지 및 경기인등록 관리○ 시·도협회 및 위원회 지원 업무○ 전국대회 의전출장 및 기타 관련 업무

2 근무형태 및 조건

채용분야	근무신분	근무시간	근무지	월 보수
사무행정	정규직	상시근무자, 주 5일(월~금), 1일 8시간 (09:00~18:00)	SK핸드볼경기장 129호 (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24)	협회 내규에 따름

* 업무특성상 대회 및 행사 등으로 주말근무, 국내외 출장이 가능한 자

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

구분	주요내용
공통사항	자격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학사학위 이상 학력 소지자○ 고등학교 이상 학력 소지하고 체육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○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○ 컴퓨터활용능력 및 문서작성 가능자○ 업무특성상 대회 및 행사 등으로 주말근무, 국내외 출장이 가능한 자
	우대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체육 행정업무 유경험자○ 체육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○ 컴퓨터활용능력 및 문서능력 관련 자격증 보유자○ 대한민국족구협회 지도자자격증 보유자

4 전형절차



가. 채용일정 * 일정은 사무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구분	추진일정
서류전형 (원서접수)	2023. 5. 26.(금) ~ 2023. 6. 11.(일) [합격자발표: 2023. 6. 12.(월) 예정]
면접전형	2023. 6. 14.(수) ~ 16.(금) [합격자발표: 2023. 6. 16.(금)] ※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
정식임용	2023. 6. 19.(월) 예정

나. 전형별 주요내용

구분	주요내용	비고
② 전형별 평가방법		
서류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력서 1부(별도 첨부양식) • 자기소개서 1부(별도 첨부양식) •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(별도 첨부양식) • 임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부존배 확인 서약서 1부(별도 첨부양식) • 우대사항 증빙서류(해당자) •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(해당자) <p>** 미 제출 시, 원서접수 불가/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</p>	
면접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일시/장소) 2023. 6. 14.(수) ~ 16.(금) *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• (평가기준) 자기표현력, 리더십역량, 직무역량, 태도역량, 인간관계, 기타질문 • (평가방법) 면접위원별 6개 항목 평가 	
최종합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선발기준) 합격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선발 - 최종합격 적합자(평균 60점 이상)가 없을 경우 재공고 - 동점자 발생 시, 평가항목 고득점자순(직무역량 → 리더십역량 → 자기표현력 → 태도역량 → 인간관계 → 자유질문)으로 결정함 • (최종확정) 지원 자격 검증 후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확정 	
예비합격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차순위 1~2위를 예비 합격자로 하고, 최종합격자 중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순위대로 임용 -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	

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
제출시기	제출서류	제출방법	용도
① 공통(유의사항)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서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(이메일(jokgu@sports.or.kr) 발송) • 수신시간 이후 추가 접수 절대불가(송신시간 기준이 아니므로, 제출에 문제 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 요망) • <u>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은 증빙서류 모두 제출</u> • <u>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</u> 			
② 제출서류 및 방법			
원서접수 [5.26.(금) ~ 6.11.(일)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력서(별첨 양식참조) ※ 메일 및 입사지원서 제목 - 대한민국족구협회 지원_이름 ○ 자기소개서(별첨 양식참조)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별첨 양식참조) ○ 임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부존재 확인 서약서(별첨 양식참조) ○ 우대사항 증빙서류(해당자) ○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(해당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메일 제출 - jokgu@sports.or.kr 	입사지원
면접당일 [6.14.(수) ~ 6.16.(금)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분증 지참 *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발행 신분증만 인정 ○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○ 남자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본제시 ○ 사본제출 	입사지원 확인용 결격사유 확인용
합격자 발표 후	해당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채용신체검사서 * 단, 신체검사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본제출 	

6 유의사항

-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,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됩니다.
-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,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기 바라며,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경력의 계산, 자격증, 교육사항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대한민국족구협회 홈페이지(www.jokgu.or.kr)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.

7 문의 및 연락처: 임현정 대리(☎ (2)2202-5526(내선4))

2023. 5. 26.



대한민국족구협회 인사규정 제17조(임용 결격사유)

제17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.

1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2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3.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4. 기타 법령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
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